

문서번호	공과대학-6302
보존일자	3년
보고일자	2021.07.21.



기안자	에너지화학 공학과장				
박초원	07/21 문준영				
협 조					

에너지화학공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지급 내부 규정

2021.07.21.



에너지화학공학과

- ❖ 학업우수장학금 선정시 학과 내부 규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항목을 보완하여 정량적이고 분별력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내부 규정을 부분 개정 수립하였으며, 이는 **2017-1학기 장학금 지급**부터 적용하고 있음.

I 지 급 대 상 기 본 규 정

- 에너지화학공학과 재학생
 - ☞ 학적변동자 제외
 - ☞ 단,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허용
- 직전학기에 17학점이상 이수하여 평점 3.0 이상 인자(교내장학금 필수요건)
 - ☞ 단, 4학년의 경우 취업경력차원에서 15학점이상 이수 적용

위 규정 충족 후 아래 두가지 조건 확인

- 전공 15학점 이상 개설시, 재수강학점 제외 전공 **14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단, 4학년의 경우 전공 **11학점** 이상 이수 적용
 - ☞ 에너지화학공학개론2의 경우 에너지화학공학개론 이수여부 확인후 전공학점 확인
 - ☞ 공정설계 및 제어의 경우 공정제어1 이수여부 확인후 전공학점 확인
- 전공 15학점 미만 개설시, 재수강학점 제외 **14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인정 이수구분 : 인천대학교 전체 이수구분 교과목
 - ☞ 단, 4학년의 경우 **11학점** 이상 이수 적용

- 타 장학금 미 수혜자
 - ☞ 타 장학금 신청 예정 및 수혜 예정인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국가장학금, 간부장학금, 봉사장학금 제외)

II 지 급 대 상 예 외 규 정

- 지급대상기본규정 적용 장학금 지급 후 여석 발생 시 전공개설학점에 따른 이수 학점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 ☞ 전공개설학점에 따른 이수학점 기준 외 기본 규정은 만족해야함
- 전공 15학점 이상 개설시, 재수강학점 제외 전공 **1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단, 4학년의 경우 전공 **8학점** 이상 이수 적용
- 전공 15학점 미만 개설시, 재수강학점 제외 **1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인정 이수구분 : 인천대학교 전체 이수구분 교과목
 - ☞ 단, 4학년의 경우 **8학점** 이상 이수 적용
- 이수학점 계산 시 일반적으로 에너지화학공학과 개설 전공교과목(재수강 제외)을 전공이수학점으로 계산하며, 특이학적자(전과, 편입, 부·복수·연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계산하여 인정함.
 - ☞ 전과·편입생 : 수학관련 타학과 개설 교과목 (재수강 제외)

- ☞ 부·복수·연계과정 : 부·복수·연계전공과정 개설 해당 교과목(재수강 제외)
- ☞ 단, 부·복수·연계과정 승인 전 이수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므로, 승인 통보 후 이수해야 인정

III 지 급 순 위 산 출 기 준

- ☐ 인천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학기성적, 학과자율, 담임교수추천영역으로 산출
- ☞ 학기성적영역A(60%)+학과자율영역B(20%)+담임교수추천영역C,D(20%)=100%

IV 영 역 별 세 부 기 준

- ☐ 학기성적영역A(60%)
 - ☞ 한 학기 동안의 평점으로만 산출하는 영역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자동입력산출
- ☐ 학과자율영역B(20%)
 - ☞ 공인영어성적(TOEIC)으로만 산출하는 영역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
 - ☞ 학년 별 최소 점수 이상의 성적만 적용이 가능하며, 미달점수는 미반영
 - 최소 점수 기준 : 1학년-300점 / 2학년-400점 / 3학년-500점 / 4학년-600점

[학년별 공인영어성적 적용 방법]

1학년 : 0-299점(0점), 300-499점(15점), 500-699점(17점), 700-899점(19점), 900점이상(20점)
 2학년 : 0-399점(0점), 400-599점(15점), 600-799(17점), 800-899(19점), 900이상(20점)
 3, 4학년 : 제출한 TOEIC점수/990 X 20

- ☞ 적용 가능한 공인영어성적은 매 학기 초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1학기 장학금 : 06월 ~ 11월 시행 공인영어성적(TOEIC)을 기본으로 함
 - 2학기 장학금 : 12월 ~ 05월 시행 공인영어성적(TOEIC)을 기본으로 함
 - 단, 신입(편입)생은 입학(전입)연도 3월 이후 취득한 공인영어성적이어야 함.
 - 전과생의 경우 전입 전 취득한 공인영어성적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만 적용하며, 이후 전입 연도 3월(또는 9월)이후 취득한 공인영어성적이어야 함.
 - 복학생의 경우 휴학기간동안 취득한 공인영어성적의 적용을 원할 경우, 학과에 필히 확인절차 후 적용해야 하며 확인 미시행 시 적용 불가 (1회 적용)
 - 해당기간동안에 다수의 공인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최고점 1건만 제출가능하며, 남은 공인영어성적은 다음 학기 적용불가
- ☞ 인천대학교 최우수 장학금 기준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규정

☐ 담임교수추천영역C(15%)

- ☞ 매 학기 개강 후 학과홈페이지를 통하여 담임교수배정을 받고, 학기말까지 1회 이상 정기상담(수시상담)을 시행하여 받는 점수로 산출하는 영역임
 - 미 시행 시 0점, 시행할 경우 최대 15점까지 점수 부여
- ☞ 상담기간, 상담진행방식, 상담점수에 대해서는 담임교수님께 직접 안내를 받아야 하며, 담임교수에 모든 권한이 있음
 - 학기 종료 후 학과홈페이지에 상담점수 확인 절차(이의제기) 실시 후 점수 적용

□ 담임교수추천영역D(5%)

- ☞ 봉사활동, 취업진로 등의 활동점수로 산출하는 영역으로 최대 5점까지 인정하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함
- ☞ [봉사]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년대표 : 각 2점
 - 증빙서류 : 없음
 - 단,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전·후 해당자 모두 배점 적용 불가
- ☞ [봉사] 교내봉사(국가근로, 봉사장학생)장학생 : 각 1점
 - 증빙서류 : 출근부 월별 사본(담당자 도장 날인)
 - 봉사장학생, 국가근로는 중도포기 시 적용 불가
- ☞ [봉사] 교외봉사(한달 10시간 씩 6개월 이상/3개월이상) : 2/1점
 - 증빙서류 : 봉사확인서 제출
 - 봉사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심사 적용
 - 단, 신입(편입)생은 입학(전입)연도 3월 이후 시행한 봉사확인서이어야 함.
 - 전과생의 경우 전입 전 시행한 봉사실적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만 적용하며, 이후 전입 연도 3월(또는 9월)이후 시행한 봉사실적이어야 함.
 - 복학생의 경우 휴학기간동안 시행한 봉사실적의 적용을 원할 경우, 학과에 필히 확인절차 후 적용해야 하며 확인 미시행 시 적용 불가
- ☞ [봉사] 학과입시진행봉사(수시1차, 수시2차, 편입학) : 각 0.5점
 - 증빙서류 : 없음
 - 수시면접진행보조 : 1학기 장학금 적용
 - 편입면접진행보조 : 2학기 장학금 적용
 - 교내봉사장학생이 입시진행봉사할 경우 추가 배점 적용
 - 학과 외 입시 진행 봉사는 미적용
- ☞ [취업진로] Job Cafe 방문(대학창조일자리센터 이용내역 포함) : 1회 0.5점 최대 1점
 - 증빙서류 : 방문확인서
- ☞ [취업진로] 학업그룹활동 : 각 0.5점
 - 증빙서류 : 참여확인서
 - 학업그룹활동(전공튜더링, 스터디그룹, 비스터디그룹) 종료 후 참여확인서 제출
- ☞ [취업진로] 기사(산업기사) 자격증 : 건 2점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 비전공관련 자격증도 가능하며, 자격증 사본 제출(합격통지서 대체 가능)
 - 심사 적용
 - 자격증 1건당 1회 적용가능
 - 전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적용 가능

V 최우수장학금추가기준

- ☞ 인천대학교 학칙에 의거 '최우수' 장학생은 학년별 공인영어성적 인정점수 이상 취득해야 해당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

- ☞ '최우수' 자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장학금을 1단계 낮춰 '우수' 배정 인원으로 지급하며, 하향된 만큼 '우수'자 중 점수 통과자에 '최우수' 지급
 - '우수'자 중 적합자 없을 경우 차순위 학생에 '준우수' 장학금 별도 지급
- ☞ 인정기한이 유효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유효일 기준은 제출일이 아닌 인천대학교 장학금 추천 기한보다 후의 날짜여야 함
 - 따라서, 기한이 애매한 공인영어성적의 미적용 불이익은 본인 책임
 - 최우수장학금 지급을 위해 기 제출한 성적은 재적용 불가(성적 당 1회 적용)
 - 단, 순위산출을 위해 제출하였으나, 최우수장학금 지급을 위해 미 제출 하였던 공인영어성적은 인정기한이 유효하면 제출 가능함(학과문의 후 제출)
- ☞ 공인영어성적 인정 점수표 (학년=학업성적 학년)

구 분	TOEIC				TOEFL (iBT)				New TEPS				IELTS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만 점	990점				120점				600점				9				200				200			
기타 모든 학과	600	650	700	750	57	73	82	87	255	281	284	313	5	5.5	6	6.5	110	120	130	140	120	130	140	140

- 인천대학교 학칙 기준에 따름

VI 학년 대표 장학 기준

- ☞ 학년 대표에게 한 학기동안 공로에 대해 지급되는 장학금이며, 학업우수 장학금 준우수 배정인원 4인 이상 시 마지막 장학금을 간부장학금으로 지정하여 지급함
 - 지급대상 기본 규정 외 학년대표장학기준 또한 모두 만족하는 자에 지급함
- ☞ 지급기준
 - 1학기 동안 활동 유지(중도 변경 및 미활동 시 지급 불가)
 - 최소 평점 3.3 이상 취득
 - 공인영어성적(TOEIC) 최소 400점 이상 취득
- ☞ 준우수 배정인원 3인 이하인 경우에는 학년대표 장학금 미지급
- ☞ 학년대표가 상위 장학금(최우수, 우수) 대상이 되면 상위 장학금 지급
- ☞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며 학업우수장학금 배점요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정함

VII 장학금배점요청관련지침

- ☞ 장학금 배점요청은 종이문서 접수 (요청기한 엄수)
 - 학기 종료 후 일주일 이내 해당 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 장학금 배점요청 기한 학기 중 학과홈페이지 공지
 - 장학금은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 기한을 어겨 미적용 되는 문제는 제출자에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 접수 및 적용 불가
- ☞ 제출서류 내용 및 증빙 확인 철저
 - 요청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증빙서류 누락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적용 불가 또한 증빙서류는 있으나 요청서에 미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증빙에 대한 적용 불가

- ☞ 허위사실 기재 시 향후 장학금 대상에서 영구 제외
- ☞ 객관적인 정보로만 장학금 대상을 산출함
 - 특이사항 발생 시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함
- ☞ 장학금 대상자는 휴학 진행 시 행정조교 경유 확인 필
 - 행정조교 경유 없이 단독 휴학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책임

IX 장학금배점요청관련서식

- ☞ [서식1] 장학금 배점 요청서

